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자치행정과	1

(2012. 11. 27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1월 22일

나. 의안번호 : 12-99

4. 관련근거

가. 도화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화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강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 관련 별표 “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” 중 도화동과 용강동의 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「도화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화2길 77에서 도화길 37」로 변경하고, 「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토정로29길 3-6에서 토정로27길 14」로 변경함.
- (2)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2년 4월 16일부터, 도화동주민센터 소재지변경은 2012년 8월 6일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함.

< 검토의견 >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화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강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